

감염증법에 따른 주요 조치의 개요

	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	일류(一類)감염증	이류(二類)감염증	삼류(三類)감염증	사류(四類)감염증	오류(五類)감염증	지정감염증
지정되어있는 질병명	신종 인플루엔자 · 재유행형(再興型)인플루엔자	에볼라 · 페스트 · 라사열 등	결핵 · 사스 · 조류 인플루엔자(H5N1) 등	콜레라 · 세균성 이질 · 장티푸스 등	황열 · 조류인플루엔자(H5N1이외) 등	인플루엔자 · 성기 클라미디아 감염증 · 매독 등	※법령으로 지정 (현재는 해당없음)
질병명의 지정방법	법령	법령	법령	법령	법령 · 정령	법령 · 성령(省令)	정령
의심되는 질병이 있는 환자에게 적용	○	○	○ (정령에서 정하는 감염병만)	-	-	-	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은, 감염병마다 정령으로 규정
무증상 병원체 보유자에게 적용	○	○	-	-	-	-	
진단 · 사망했을시의 의사에 의한 신고	○ (지금 즉시)	○ (지금 즉시)	○ (지금 즉시)	○ (지금 즉시)	○ (지금 즉시)	○ (7일 이내)	
수의사의 신고, 동물의 수입에 관한 조치	○	○	○	○	○	-	
환자 정보 등의 고정된 파악	-	-	△ (일부 의심스러운 증상만)	△ (일부 의심스러운 증상만)	△ (일부 의심스러운 증상만)	○	
적극적인 역학조사 실시	○	○	○	○	○	○	
건강진단 진찰 권고·실시	○	○	○	○	-	-	
취업 제한	○	○	○	○	-	-	
입원 권고·조치	○	○	○	-	-	-	
검체의 수거·채취 등	○	○	○	-	-	-	
오염된 장소의 소독, 물건의 폐기등	○	○	○	○	○	-	
쥐, 곤충등의 박멸	○ (※)	○	○	○	○	-	
생활용수의 사용 제한	○ (※)	○	○	○	-	-	
건물출입제한 · 폐쇄 · 교통 제한	○ (※)	○	-	-	-	-	
발생 · 실시하는 조치 등을 공표	○	-	-	-	-	-	
건강상태 보고, 외출 자숙 등의 요청	○	-	-	-	-	-	
도도부현에 의한 경과보고	○	-	-	-	-	-	

~2023년5월7일

2023년5월8일~

※감염증법 44조의 4에 근거해 정령이 정해져, 적용하게 된 경우에 적용(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는 적용 없음)